

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(변경)공고

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북부순환로에 대한 통행료 수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(변경)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15일
수 원 시 장

1. 도로의 종류 : 도시계획도로(유료도로)
2. 노 선 명 : 수원북부순환로
3. 통행료 수납자 : 수원순환도로(주) 대표이사
4. 주요구간 통행료

(단위 : 원)

구 분	1종	2종	3종	4종	5종
장안영업소	1,700	1,700	1,700	1,900	2,100
조원영업소	1,100	1,100	1,100	1,200	1,300

※ 차종 분류기준

차종구분	분류기준	해당차량
1종	· 2축, 윤폭 279.4mm 이하	· 승용차, 16인승 이하 승합차 · 2.5톤 미만 화물차
2종	· 2축, 윤폭 279.4mm 초과 · 윤거 1,800mm 이하	·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· 2.5톤 이상 5.5톤 이하 화물차
3종	· 2축, 윤폭 279.4mm 초과 · 윤거 1,800mm 초과	· 33인승 이상 승합차 · 5.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
4종	· 3축차량	·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
5종	· 4축 이상 차량	· 20톤 이상 화물차

5. 시설물의 명칭 : 장안영업소, 조원영업소

6. 통행료 수납구간 :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~ 영통구 이의동

1) 장안영업소 : 파장IC ~ 영통구 이의동

2) 조원영업소 : 조원IC ~ 영통구 이의동

* 조원IC 진입 시 장안영업소 방면 진출 불가

7.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

○ 납부대상 :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

○ 감면대상 :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시행규칙 제5조에
의한 차량

8. 통행료 수납방법 : 요금소 통과 시 현금, 하이패스카드(선불, 후불) 등으로 지불

9. 통행료 수납기간 : 2023. 4. 1. ~ 2050. 9. 20.

※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